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2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 홍기원 · 김태년 · 한민수

윤종군 • 윤준병 • 박지원

강훈식 • 이정문 • 송옥주

이연희 • 민형배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 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 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통고가 있는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해제 여부의 표결을 하도록하고, 계엄 중에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 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결은 국무회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경우 즉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해제 여부를 표결하되, 국회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회 권한 및 기능의 보장) ①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국무회

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⑤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심의·의결을		
<후단 신설>	이 경우 의결은 국무회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②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른 통고		
	를 받은 경우 즉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동		
	의ㆍ해제 여부를 표결하되, 국		
	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u><신 설></u>	제8조의2(국회 권한 및 기능의		
	보장) ①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u>수 없다.</u>		
	②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u>사령</u>	관은 _	국회의	기능을	보호
하고,	국회	의원의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한	조치를	를 강구.	시행
하여	야 한다	<u> 1.</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2)	